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165-202
<https://doi.org/10.29212/mh.2019..110.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시대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및 사환의(師還儀)의 성립과정과 내용*

한정수**

1. 머리말
2. 군례(軍禮)의 의미와 수용
3.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4. 사환의(師還儀)
5. 맺음말

1. 머리말

왕조국가에서 국가의례의 정비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 질서의 정립을 의미한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국왕과 왕실을 축으로 한 국가의례의 정비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적어도 성종 대 예제의 정비를 거쳐 인종 및 의종 대에는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로 예제

* “이 논문은 2016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가 종합 정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¹⁾

그러나 주지하듯이 『상정고금례』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이에 『고려사』 예지를 통해 고려의 예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예지는 『고려사』 찬자들이 정리한 결과물에 해당한다. 찬자들은 『상정고금례』를 중심으로 사편(史編)·『주관육익(周官六翼)』·『식목편록(式目編錄)』·『번국예의(蕃國禮儀)』 등을 참조하여 고려의 의례를 길·흉·군·빈·가의 오례로 분찬(分纂)한 것이다.²⁾ 이를 토대로 본다면 예지는 고려왕조에서 완전하게 정비된 의례를 분류 편찬한 것이 아니라 의미는 된다. 당시 구체적인 의례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려의 예제는 왕권을 최고의 위상으로 분류하고 국왕에게 최고의 권위를 향유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고려의 왕권과 정치 질서는 의례의 틀로 명분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³⁾

이러한 예지 오례 중 군례는 건장출정의(遣將出征儀)·사환의(師還儀)·구일월식의(救日月食儀)·계동대나의(季冬大儺儀)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이 요약해진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군례 편찬 시 기본 자료가 되었을 『상정고금례』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⁴⁾ 더구나 군제 및 병제사 연구에서처럼⁵⁾ 군례와 관련해서는 그 성립배경과 과정, 그리고 내용 및 성격 등에 대한 이해가 제시되었

1) 이는 『詳定古今禮』의 편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상정고금례』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研究』, 일조각, 1991; 김당택, 「『상정고금예문』의 편찬 시기와 그 의도」, 『호남문화연구』 21, 1992; 김해영, 「『상정고금례』와 고려조의 祀典」, 『국사관논총』 55, 1994; 김철웅, 「『詳定古今禮』의 편찬 시기와 내용」, 『동양학』 33, 2003; 김창현,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韓國史學報』 44, 高麗史學會, 2011.

2) 『고려사』 권59, 지13 禮志序.

3) 이 같은 오례의 의미에 대한 정리로는 다음을 참조. 이범직, 앞의 책, 401~402쪽; 한정수,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4) 김창현, 위의 논문, 76쪽.

5) 李基白,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권영국, 『高麗後期 軍事制度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尹薰杓, 「高麗時代 軍制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4, 1997; 홍원기, 『高麗前期軍制研究』, 혜안, 2001; 송인주, 『고려시대 친위군 연구』, 일조각, 2007; 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김종수, 「고려전기의 무반과 군반」, 『韓國史研究』 164, 2014.

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군례에 대한 개관적 검토를 시도한 연구가 있을 따름이다.⁶⁾ 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려의 군례가 대외적 군사행위의 일면을 담고 있어 당(唐) 시기에 설정한 군례의 개념을 반영하려 했다 본 점과 군례 운영에 있어서의 고려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황제 친정을 반영한 당과 달리 고려에서는 국왕이 출정하지 않고 장수만을 파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 당에서의 강무(講武)·수전(狩田)·사(射)에 관한 항목이 고려의 군례에서는 빠져있다는 점, 당의 군례와 달리 고려에서는 구일월식의와 계동대나의를 군례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이 독자적 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고려시대 군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었는가, 이를 통해 고려왕조가 목적인 바와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 정리가 미흡한 면이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⁷⁾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 가운데 군례의 의미와 「예지」 군례편의 구성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실제 군례의 내용이 고려에 어떻게 존재했는가와 관련한 이념적 토대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견장출정의의 성립과 내용, 실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의례절차와 운영이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고려왕조가 군사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정에 따른 의

6) 이범직, 앞의 책, 159~170쪽. 이와 함께 신라의 경우 적어도 문무왕 대 이후 『開元禮』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군례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신라에서 행한 大閱觀射凱旋獵巡幸 등 여러 양상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어 참고가 된다.(채미하,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韓國史研究』 149, 2010) 더불어 조선 초 군례 특히 射禮를 중심으로 이해를 도모하면서 중국사 속 군례의 이해와 변화에 대한 정리와 그 수용 등을 살펴본 논고도 있어 참고할 수 있다.(李旺茂,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東洋古典研究』 54, 2014)

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본격적인 軍旅 운용과 관련한 의례로서 『고려사』 예지상의 군례로 분류하고 있는 견장출정의와 사환의를 중심으로 그 형성과정과 내용, 의미 파악에 집중하고자 한다. 고려시대의 군례와 직접 관련이 있을 親征 및 講武, 狩田, 射, 閱兵 등의 의례 존재 양상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밝혀 나갈 것이다.

례에 짝하는 것으로서 ‘사환의’의 내용과 사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고려가 개환한 원수와 삼군 등을 어떻게 위로하고 이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는가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리라 본다.

이상 군례 가운데 실제 출정과 개선과 관련한 견장출정의 및 사환의에 대한 조명을 통해 고려시대 군례의 중요 내용과 그에 대한 성격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이 연구는 예제(禮制)에 기초한 고려시대 통치원리와 그 기제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군례(軍禮)의 의미와 수용

군(軍)은 군사 혹은 군사를 운영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군사를 모으고 무력을 갖추며 훈련을 통해 외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혹은 참일하게 왕권을 도모하는 모반세력의 도전을 예방하고 정벌하기 위한 위엄과 억지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의 정비는 내외의 평화와 안녕을 도모함으로써 왕실과 천하를 지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왕조사회에서 군주와 장수, 병사 등이 각기 질서를 갖추고 강무열병 등 훈련을 행하며, 군량을 쌓아 실제 전란에 나아감과 함께 전후 축성 등 영토 확보와 유지 등을 전개하는 내용은 일찍이 치군(治軍)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예기』 곡례상에 보인다. 즉, 예가 있어야 도덕인의로부터 조정 반렬과 치군(治軍), 기도와 제사를 통해 귀신에게 공급하는 일 등이 이루어지며, 때문에 군자는 공경하고 준절하여 사양하고 물러서서야 예를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⁸⁾ 이는 예가 수양으로부

8) 『禮記』 曲禮 上, “道德仁義 非禮不成 教訓正俗 非禮不備 分爭班訟 非禮不決 君臣上下 父子兄弟 非禮不定 宦學事師 非禮不親 班朝治軍 涖官行法 非禮威嚴不行 禱祠祭祀 供給鬼神 非禮不誠不莊 是以君子恭敬擗節退讓 以明禮”

터 국가운영, 군대 통솔, 종교적 기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가치이자 의식임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서도 치군을 통해 위엄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예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예기』 곡례상에서는 “예가 아니면 위엄이 행해지지 않는다.”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 실천에는 공경(恭敬)·준절(撙節)·퇴양(退讓)의 원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⁹⁾ 이를 보면 치군하는 데 있어서도 세 가지 원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치군의 예로서 군례가 필요함을 읽을 수 있다.¹⁰⁾

그런데 이 같은 군례와 관련하여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 밝힌 것으로 『주례(周禮)』가 있다. 그 가운데서 군례가 갖는 대의(大義)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 관련해 다음의 사료를 주목해 보자.

가-1) 군례로 방국(邦國)을 동화(同和)한다. 【동화란 불협(不協) 참차자(僭差者)를 위엄으로 다스림을 말한다. 군례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대사례(大師禮)는 군중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의용(義勇)을 쓰는 것이다.】 대균례(大均禮)는 군중을 진휼하는 것이다. 【지정(地政)·지수(地守)·지직(地職)의 부세를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백성을 아껴서이다.】 대전례(大田禮)는 군사를 간택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전야에서 군사 훈련을 행하여 거도(車徒)의 수를 열병하였다.】 대역례(大役禮)는 군중에게 부역을 맡기는 것이다. 【궁음을 쌓는 데에 민력(民力)의 강약에 따라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봉례(大封禮)는 무리를 합하는 것이다. 【봉강(封疆)과 구도(溝塗)를 견고하게 하여 백성들을 합취(合聚)하게 하는 것이다.】¹¹⁾

9) 앞과 같음.

10) 물론 이때의 공경·준절·퇴양은 비단 治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禮 전반에 걸치는 것이었다. 치군에 이러한 세 가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지적은 그만큼 군례 威儀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11) 『周禮』 春官宗伯 大宗伯, “以軍禮同邦國 【同謂威其不協僭差者 軍禮之別有五】 大師之禮 用衆也 【用其義勇】 大均之禮 恤衆也 【均其地政 地守 地職之賦 所以憂民】 大田之禮 簡衆也 【古者因田習兵 閱其車徒之數】 大役之禮 任衆也 【築宮邑 所以事

『주례』에서는 예에 대해 길례를 포함해 군례 등 오례로 나누어 그 의의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¹²⁾ 위의 내용은 『주례』 춘관종백(春官宗伯) 대종백(大宗伯)조에 있는 내용이며 한대 정현(鄭玄)이 쓴 주(注)가 부기되어 있다. 이 군례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불협 참차자 즉 참월한 제후 등에 대해 군사의 위엄을 보여 화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례』에서 이 같은 예를 세우고자 한 데에는 주(周)의 천하질서가 주 왕실과 제후 간의 질서로 구축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었다.¹³⁾

『주례』에서의 군례는 크게 대사·대균·대전·대역·대봉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기 용중(用衆)·홀중(恤衆)·간중(簡衆)·임중(任衆)·합중(合衆) 등을 행하는 것으로 군정(軍政)에 대한 언급에 가깝다. 그만큼 군례와 군사 및 군정의 부분이 구분되지 않고 있었음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점차 군사를 운용하는 군사 및 군정의 일은 대체로 ‘병(兵)’으로 구분되어 갔다.¹⁴⁾

또 한편으로 주제(周制)로 소개되고 있는 군례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天子將出征 類於上帝 宜於社 造於禴 肆師爲帝位 禡於所征之地”라 한 내용이 보이고 있는데,¹⁵⁾ 내용의 면만 본다면

民力强弱】大封之禮 合衆也【正封疆溝塗之固 所以合聚其民】”

12) 五禮와 관련한 언급은 이미 『書經』 虞書 舜典 臯陶謨 편에 보인다. 순임금이 즉위한 2월에 동쪽으로 巡守하면서 차례로 산천에 望을 행하고 東后를 만나 時月日을 바로잡고 악물과 도량형을 같게 하였으며 五禮 등을 정리한 것으로 나온다. 물론 이때의 것이 길·흉·군·가·빈의 오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최초의 오례에 대한 언급인 것만은 분명하다. 즉, “歲二月 東巡守 至于岱宗 柴望秩于山川 肆觀東后 協時月正日 同律度量衡 修五禮 五玉 三帛 二生 一死 贊如五器 卒乃復”이라 하고 있다.

13) 이에 대해서는 이범직, 앞의 책, 161쪽 참조.

14) 二十五史 중 志 부분에 兵을 둔 것은 『新唐書』 권50, 志 40 兵조에서부터였다. 또한 杜佑가 찬한 『通典』 卷148, 兵 1부터 卷162, 兵15에 걸쳐 兵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15) 『通典』 卷76, 禮36 沿革36 軍禮1에 소개되어 있는 관련 내용 중 세주를 뺀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周制 天子將出征 類於上帝 宜於社 造於禴 肆師爲帝位 禡於所征之地 受命於祖 以遷廟主載於齊車以行 無遷主 以幣帛皮珪告於祖禴 遂奉以出 載於齊車以行 每舍奠焉 而後就舍 反必告 設奠 卒 斂幣玉 藏諸兩階之

위에서 소개한 『주례』의 군례와는 차이가 있다.¹⁶⁾ 그렇지만 출정 때 류(類)·의(宜)·조(造)의 제사를 행하여 승전을 기원함으로써 예를 갖추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같은 출정 시 제사는 이후의 왕조에도 보인다.

춘추전국시대와 흉노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치군의 내용은 점차 강무(講武)·수전(狩田)·사(射), 친정(親征)·평탕구적선로포(平蕩寇賊宣露布)·노군장(勞軍將), 합삭벌고(合朔伐鼓)·대나(大難) 등으로 분화, 정리되었다. 특히 『사기』 및 『한서』 등에는 군례와 관련한 명확한 표현이 보인다. 한 문제 6년 하내수(河內守) 주아부(周亞夫)는 황제가 세류영(細柳營)을 방문했을 때 문제에게 갑주를 착용하고 있어 절을 올리지 못하니 군례로서 보아달라고 한 바 있는데,¹⁷⁾ 이는 『예기』 곡례상에 갑옷을 입은 자는 절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통한다.¹⁸⁾

군례가 왕조운영을 위한 오례의 하나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서진(西晉) 초 신례(新禮)가 제정되어 『주례』의 오례 구조에 따라 왕조례를 분류 적용한 『진서(晉書)』에서부터였다.¹⁹⁾ 『진서』 예지에서는 군례를 오례의 네 번째로 구별하고 그에 대해 정의하길, “외국과 화친하고 안으로는 평안하게 하고자 군사를 강대하게 하고 공업을 정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의례 내용 서술은 보이지 않으나 ‘견장출정’에 대한 간단한 의례절차가 소개되고 있다.²⁰⁾ 그

開 乃出 蓋貴命也 受成於學 過大山川 則用事焉 出征執有罪 反 釋奠於學 以訊誠告 諸侯將出征 宜社造禰及無遷主以主命 並如天子之制”

16) 이 부분은 『禮記』 王制 편에 보인다. 즉, “天子將出 類乎上帝 宜乎社 造乎禰 諸侯將出 宜乎社 造乎禰”라 하고 있다.

17) 『史記』 卷57, 世家 27 絳侯周勃世家, “至中營 將軍亞夫揖曰 介胄之士不拜 請以軍禮見”. 같은 내용이 『漢書』 卷40, 열전 10 張陳王周傳 周勃 附 周亞夫에 실려 있다.

18) 『禮記』 曲禮 上, “介者不拜 爲其拜而夔拜”

19) 이를 대체로 晉禮로도 호칭하는데, 『진서』와 『통전』 등에서 확인되는 오례로는 길례 5조항, 흉례 6조항, 빈례 2조항, 군례 1조항 등 모두 14조항이 있다.(洪承賢, 「晉代 喪服書의 편찬과 성격」, 『東洋史學研究』 102, 2008, 13~15쪽)

20) 『晉書』 卷21, 志11 禮 下, “五禮之別 其四曰軍 所以和外寧內 保大定功者也 但兵者凶事 故因搜狩而習之 (중략) 漢魏故事 遣將出征 符節郎授節鉞於朝堂 其後

내용은 『주례』에서의 군례에 소개된 대사대군·대전·대역·대봉의 예와 차이가 있다.

한편 양(梁) 무제(武帝)는 오례의 직을 두어 예제 운영을 도모한 바 있다. 서면(徐勉)은 양 무제 보통(普通) 6년(525) 오례를 갖출 것을 청하는 표문을 올렸고, 나라를 위하고 수신을 위해서는 이것이 시급함을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례의주(嘉禮儀注)』(507)·『빈례의주(賓禮儀注)』(507)·『군례의주(軍禮儀注)』(510)·『길례의주(吉禮儀注)』(512)·『흉례의주(凶禮儀注)』(512) 등이 이루어졌다. 구학사우군기실참군(舊學士右軍記室參軍) 명산빈(明山賓)은 길례를, 중군기병참군(中軍騎兵參軍) 엄식지(嚴植之)는 흉례를, 중군전조행참군겸태상승(中軍田曹行參軍兼太常丞) 하창(賀瑒)은 빈례를, 정로기실참군(征虜記室參軍) 육연(陸璉)은 군례를, 우군참군(右軍參軍) 사마경(司馬駿)은 가례를 맡게 할 것을 청한 바 있다. 특히 서면은 군례에 대해 “군려(軍旅)를 예(禮)로서 운영하지 않으면 곧 사율(師律) 즉 군율에 치란(致亂)이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²¹⁾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으나 오례와 관련한 의주가 마련되었고 그에 기반하여 오례 각각의 직을 맡은 이들을 정해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서(隋書)』에서는 오례를 길·흉·군·가·빈의 순서로 구성하면서 군례에 대해 ‘以軍禮誅不虔’이라 하여 군례로서 참월한 이를 벌하는 것이라 하였다.²²⁾ 『진서』에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다만 『수서』 단계에서는 군례의 내용에 변화가 보인다. 분명하게 친정(親征)·순수(巡狩)·명장출정(命將出征)·춘추수선(春秋蒐獮)·나(難)·일식(日蝕)·노포(露布) 등을 나눠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

이 같은 면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로 이어졌다. 여기서는 군

荀顛等所定新禮 遣將 禦臨軒 尚書受節鉞 依古兵書跪而推轂之義也”

21) 『梁書』 卷25, 列傳 19 徐勉, “軍旅不以禮, 則致亂于師律”

22) 『隋書』 卷6, 志1 禮儀1.

23) 『隋書』 卷8, 志3 禮儀3.

례를 황제친정유우상제(皇帝親征類于上帝), 황제친정의우태사(皇帝親征宜于太社), 황제친정고우태묘(皇帝親征告于太廟), 황제친정마어소지지지(皇帝親征禡於所至之地), 친정급순수교사유사발우국문(親征及巡狩登所過山川), 평탕적구선로포(平蕩賊寇宜露布), 건사로장군(遣使勞將軍), 황제강무(皇帝講武), 황제전수(皇帝田狩), 황제사우사궁(皇帝射于射宮), 황제관사우사궁(皇帝觀射于射宮), 제견대장출정유사의우태사(制遣大將出征有司宜于太社), 제견대장출정유사고우태묘(制遣大將出征有司告于太廟), 제견대장출정유사고우제태공묘(制遣大將出征有司告于齊太公廟), 사마조(祀馬祖), 향선목(享先牧), 제마사(祭馬社), 제마보(祭馬步), 합삭벌고(合朔伐鼓), 합삭제주벌고(合朔諸州伐鼓), 대나(大難), 제주현나(諸州縣難)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통전(通典)』 권76~권78의 군례와 관련한 연혁을 보면 군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그 연원과 역사적 전개를 소개하였다. 권76에서는 천자제후장출정류의조마병제소과산천(天子諸侯將出征類宜造禡并祭所過山川), 발제(輓祭), 천자제후사시전수(天子諸侯四時田獵) 출사의제(出師儀制) 【양병강무(揚兵講武)】, 명장출정(命將出征), 선노포(宣露布) 등을, 권77에서는 천자제후대사향사(天子諸侯大射鄉射) 【삼일삼일 구월구일 사부(射附)】 를, 권78에서는 천자합삭벌고(天子合朔伐鼓) 【제후부(諸侯附)】, 동하지침고병(冬夏至寢鼓兵), 마정(馬政) 【마제부(馬祭附)】, 시나(時難) 등으로 구성하였다.²⁴⁾ 전반적으로 류(類)·의(宜)·조(造)·마(禡)·발(輓) 등의 제사와 마정마제 및 시나(時難), 출사, 전렵, 강무, 노포, 습사, 합삭벌고 등이 갖춰졌다 하겠다.

한편, 『대당개원례』나 『통전』보다 늦게 편찬된 『신당서』에서는 군례의 구성을 큰 폭으로 재정비하였다. 크게는 황제친정류어호천상제

24) 『通典』 卷76, 禮36 沿革36 軍禮1 ; 같은 책, 禮37 沿革37 軍禮2 ; 같은 책, 禮38 沿革38 軍禮3.

(皇帝親征禱於昊天上帝), 의어사(宜於社), 조어묘(造於廟), 마어소정지(禱於所征之地), 발어국문(輓於國門), 강무(講武), 황제수전지례(皇帝狩田之禮), 사(射), 합삭별고(合朔伐鼓), 대나지례(大難之禮) 등으로 구성하였다.²⁵⁾ 『구당서』 등과는 달리 사마조(祀馬祖), 향선목(享先牧), 제마사(祭馬社), 제마보(祭馬步) 등은 길례 소사(小祀)로 편제하였다. 군례와 길례 소사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흐름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군례는 초기에는 황제친정을 전제로 하면서 류(類)·의(宜)·조(造)·마(禱)·발(輓)·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로 이어지는 제사가 이루어졌지만 점차 류·의·조·마·발은 포함하되 마조·선목·마사·마보 등은 길례 소사로 편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같은 많은 군례상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군례의 항목이 당시의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였다는 점, 두 번째로는 내용상 황제친정 및 명장출정(命將出征)이 있으면서도 개선·노포와 관련한 부분은 친정 항목에 부기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의례 명칭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강무와 전렵 혹은 수전(狩田), 사(射) 등이 훈련과 관련해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일식과 같은 때 합삭별고나 대나의 예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다섯 가지 점을 토대로 볼 때 중국에서의 군례는 당대에 이르러 황제친정 및 고유(告由)의 제사, 강무, 수전, 사, 합삭별고, 대나 등의 예로 유형화되었다 할 수 있겠다.

한편 이 같은 군례에 대한 고려왕조의 이해를 살펴보자. 당의 『개원례』 등을 수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 때 『예지』의 길례가 대체로 대·중·소사, 잡사 체제를 갖춘 것과 비교하면 군례의 항목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후백제와의 전쟁과 통일, 모반의 평정, 그리고 외적과의 잦은 전

25) 『新唐書』 卷16, 志6 禮樂6 軍禮.

쟁을 겪으면서 고려왕조에서는 군례와 관련한 친정 혹은 견장출정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또 이를 반영하면서 견장출정의나 사환의, 구일월식의, 계동대나의 등이 의례로 정리 운영되었음이 『고려사』 예지 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지」 군례의 구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고려에서 행해진 군례 관련 군례적 성격을 가진 의례는 대열, 강무, 전렵, 습사 등 여러 양상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밝혔듯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조·선목·마보 등은 길례 소사로 편제되고 있어 중국사에서의 군례 관련 제사의 흐름을 따랐다.

다만 견장출정의나 사환의의 성립과, 그 의례의 내용이 어떠한 면을 갖추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를 먼저 보면, 견장출정의와 관련해 국왕 친정의 의식은 빠져 있으나 대사(大社)에 대한 의제(宜祭) 및 태묘에의 고제(告祭), 경령전에서의 월(鉞) 관련 출환(出還)과 고유(告由) 등의 제사가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하였다. 또한 이때 국왕이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의식을 행한다는 점을 볼 때 국왕의 위엄을 중국 황제에 비견하려는 의식이 잠재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어 사환의 부분에서 노연례(勞宴禮) 후 강사포를 입고 부월을 받으면서 원수 등이 국왕과 접견하는 의식이 있다 정리하면서 이 또한 국왕의 위엄을 높이려는 것이라 하였다.²⁶⁾

『고려사』에서 이 같은 견장출정의와 사환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비되어 전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분명치 않다. 태조 대 기록을 통해 먼저 이를 간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조가 삼군을 거느리고 신검의 후백제군을 치기 위해 나아간 친정을 보면 구체적 내용은 찾기 어렵지만 태조 대 친정 혹은 견장출정 관련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먼저 태조 19년 6월에는 정윤인 혜종과 장군 술희에게 보기(步騎) 1만을 거느리고 천안부로 가게 했고, 이어서는 9월

26) 이범직, 앞의 책, 165~167쪽.

좌익·우익·중군의 삼군과 함께 삼군 원병을 두어 이들에 대해 태조는 견훤과 함께 관병(觀兵) 즉 대열(大閱)을 행한 바 있었다. 태조 자신이 친정을 하게 되는 경우이기에 정운인 혜종에게 지휘권을 주었다 보기는 힘든 면은 있다.²⁷⁾

이들 과정을 고려하면 이때의 군려(軍旅)는 친정과 견장출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의례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미 태조 원년 9월 상주적수 아자개(阿字蓋)의 귀부에 따른 환영의례의 행행과 관련해 습의(習儀)토록 하면서 “겸양은 예의 으뜸이고 공경은 덕의 근본이다”라 한 내용이 있다.²⁸⁾ 이를 고려하면 의례 정비와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태조는 충분히 하고 있었다 여겨진다.²⁹⁾ 따라서 태조 19년 9월의 출정 관련 기사를 볼 때 완전히 정비되지는 않았더라도 친정의와 견장출정의, 대열의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행해졌다 보아야 한다.

이는 승리 후 사환(師還) 관련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당시 기록을 보면 태조는 곧바로 귀환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백제군 대부분은 석방하고 혼강·부달·우봉·견달 등 40명을 처자와 더불어 개경으로 압송토록 하는 한편 능환을 처형한 뒤 양검과 용검은 진주(眞州)로 유배하였다가 죽이도록 하였으며 신검에게는 관작을 내려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후백제 도성에 들어가 민심을 다독였으며 언제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같은 달에 위봉루(威鳳樓)에 나가 문무백관 및 백성들의 조하를 받았다 하고 있을 뿐이다. 「예지」 상의 사환의의 내용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기』에서의 “출정하여 죄 있는 자를 잡아 돌아왔을 때에는 대학에서 석전(釋奠)의 제사를 올리고, 신문할 자와 귀를 벤 자의 수를 고유(告由)한다.”는 내용

27) 『고려사』 권2, 태조 19년 6월 ; 같은 책, 태조 19년 9월 및 9월 갑오.

28)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9월 갑오.

29) 태조 대 외교의례의 정비 과정과 관련한 연구이기는 하나 ‘讓=禮宗’, ‘敬=德本’으로 이해하면서 접빈의 예를 갖추도록 한 태조의 이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정수, 「고려 太祖代 대외 교섭과 外交儀禮」, 『韓國史研究』 170, 2015, 157쪽 참조)

역시도 확인할 수 없다.³⁰⁾

따라서 군례에서의 관련 내용과 실제 현실에 반영된 면 등을 연결해 견장출정의와 사환의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고려에서는 태조 대부터 이미 많은 군사 활동이 있었다. 이에 점차 군례에 해당하는 의례의 마련을 통해 국왕과 왕실, 신(臣)-군사(軍士)-민(民)이 위계를 갖추어 나갔으리라 생각된다.

3.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고려사』 예지에는 국왕 친정 관련 의례가 보이지 않고, 군례와 관련해서는 견장출정의와 사환의가 정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먼저 견장출정의의 성립과 그 내용에 대해 정리토록 하겠다.

『예지』에 수록된 견장출정의의 정리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보인다.³¹⁾ 예컨대 경령전(景靈殿)의 경우는 현종 2년 거란 침입으로 궁궐이 불타 현종 5년에 일차 완성된 뒤 현종 11년~12년에 중수할 때 갖추진 왕실의 원묘(原廟)였다. 사료에 등장하는 것은 덕종이 즉위하면서 6월에 경령전을 참알하고 즉위 사실을 고한 때였다.³²⁾ 견장출정을 보면 ‘월(鉞)’을 내리고 다시 받을 때 국왕이 친히 경령전에 고하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적어도 덕종

30) 『예기』 제5, 王制, “出征 執有罪 反 釋奠于學 以訊誠 告”

31) 여기서의 견장출정의 성립과 운영 시기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 『예지』 견장출정의의 규정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의 의미이며, 고려 초부터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견장출정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32) 이 같은 경령전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철웅,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통권114, 2009; 장동익, 「고려시대의 景靈殿」, 『歷史教育論集』 43, 역사교육학회, 2009; 홍영의,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한정수,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 『사학연구』 107, 2012.

이후에야 견장출정의의 내용 규정이 성립되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는 국왕이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나와 대전에 앉는 장면
에 대한 서술이 있다. 여기서 강사포는 본래 의례를 행할 때 착용
하는 조복이었다. 문종 12년 4월의 기사를 보면 문종이 어복(御服)
착용과 관련하여 예를 행할 때 홍(紅)·황(黃)의 색 외에 입을 수 있
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라 한데 대해 예사(禮司)에서 아뢴 내
용이 나온다.³³⁾ 예사에서는 『율력지(律曆志)』와 『당사(唐史)』, 『개원
례(開元禮)』, 그리고 고사(古史)를 살펴보고, 『개원례』의 사례를 들어
황제가 원구에서 기곡할 때 강사포를 입는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으
며, 또한 황(黃)·자(赭)·강(絳) 세 색을 편의대로 입을 수 있을 뿐
이라 답하였다. 이 같은 논의를 본다면 강사포는 적어도 문종 12년
전후 입기 시작하였다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견장출정의의 의례 내용 뒤에 실
린 연대기사이다. 이를 보면, 예종 2년 10월 임인일 윤관과 오연충
을 각기 원수와 부원수로 삼아 여진을 정벌하게 한 기사로부터 시
작되고 있다. 물론 연대기사가 실려 있다 해서 이것이 절대적 기준
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종 2년을 전후로 해서는 견장출정의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종 8년에 설치된 예의상정소(禮
儀詳定所)를 주목할 필요도 있겠다.³⁴⁾ 고려왕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례 전반에 대한 정비가 이 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
이다.

네 번째로는 의례 내용에 보이는 전각 및 궐문 명칭을 통해서이
다. 견장출정의에는 대관전(大觀殿)이 등장하고 태정문(泰定門)이 보
이고 있다. 대관전은 인종 16년 5월 경술일에 여러 전각의 이름을
고칠 때에 건덕전(乾德殿)을 고친 이름이며, 태정문은 태초문(太初
門)에서 바뀌었다.³⁵⁾ 이렇게 본다면 견장출정의의 의례 내용은 인

33) 『고려사절요』 권5, 문종 12년 4월.

34)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제사도감각색 예의상정소.

35) 이에 대한 지적은 김창현,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韓國史學報』 44,

중 16년 이후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의례 내용 중에 산호만세, 산호재배 등의 표현도 의례 실시 기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산호(山呼)~’이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충렬왕 27년 4월 활리길사(闕里吉思) 등이 원에 올린 글에 나타난다. 즉 그들은 충렬왕 25년(1299) 11월 15일 팔관회와 충렬왕 26년 2월 15일에 있었던 연등회 등 두 차례 대회 때의 참월한 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³⁶⁾ 세 번 정편(淨鞭)을 들고 산호만세(山呼萬歲)를 행한 것은 천자(天子) 의제(儀制)와 같은 것으로 참월한 것이라 지적하였었다.³⁷⁾ 이후 산호만세나 산호재배 등은 쓰이지 않게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예지 군례에 정리된 견장출정의의 성립 및 전개 시기는 인종 16년 5월 이후 충렬왕 27년 4월 이전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군례에서의 견장출정의의 의례 규정은 인종 16년 5월 이후에서 충렬왕 27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의례 내용 자체는 이미 예종 2년 10월 임인일의 윤관과 오연충에 대한 출정 기사가 있으므로 이것만 보더라도 내용은 이미 예종 2년 이전에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다 하겠다.

이러한 견장출정의의 성립 시기를 전제로 하면서 실제 의례의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1, 52쪽 참조.

36) 『고려사』 세가 편에서는 충렬왕 25년 11월 팔관회 기록은 없지만 충렬왕 26년 2월 연등회 관련 기록은 단지 경신일에 연등하고 왕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는 정도만 보인다.

37) 『고려사』 권32, 충렬왕 27년 4월.

<표-1> 건장출정의의 절차

구분	내용
① 제사 및 告景靈殿	遣將出征 宜大社告太廟 竝有司行事 如奏告之儀 出鉞還鉞 王皆親告景靈殿
② 1일 전 陳設	前一日 尙舍局設王座於大觀殿上 如常儀 設元帥副元帥褥位於殿庭中心 北向 守宮署設元帥副元帥次於殿門外朝堂
③ 當日 陳設	其日 依時刻 仗衛入陳於殿庭如儀 樞密及左右侍臣 入就殿庭位 元帥副元帥 服戎服 【前一日 有司奉宣責征袍戎衣 到尙書兵部 准舊例 頒賜元帥以下從軍 文武員寮】 率兵馬鈴轄 【以承制 充之】 及諸軍從事官 俱詣殿門外 重行 北向立
④ 國王 出坐殿	訖 王服絳紗袍 出坐殿 鳴鞭 仗衛奏山呼 再拜 訖 舍人喝 樞密以下侍臣常起 居 訖 閣門引宰臣 入就位 舍人喝 宰臣再拜 訖 閣門引宰臣 自東側階升殿 近東西向 北上立 次 引宰樞 自西側階升殿 近西東向 北上立 訖 引元帥副元 帥 入殿庭 就褥位 北向立 舍人喝 元帥副元帥再拜 閣門稱有勅 舍人喝 再 拜躬聽口宣 訖 舍人喝 元帥副元帥再拜 閣門引元帥 自西階升殿 進王座之右 稟諸方略
⑤ 斧鉞 授受	上將軍奉斧鉞 詣王座右 跪進 王降座 執斧鉞 授元帥 元帥跪受 降自西階 閣門引元帥副元帥 由正門出 郎將傳奉斧鉞 在前先導 閣門引兵馬鈴轄 及諸 軍使副判官以上 入殿庭 重行北向 東上立 舍人喝 鈴轄以下再拜 又再拜 訖 閣門引 自西偏門出 錄事以下 於殿門外 禮數如上儀
⑥ 國王 入內殿	王入內殿 宰臣樞密以下左右侍臣及仗衛 以次出 元帥副元帥出泰定門外 樂作 至兵部 樂止 鈴轄以下諸軍使副判官 於階上俱重行 再拜 錄事以下 階下祇揖 吏拜 訖 便行師 如軍令式

먼저 ①제사 및 고경령전(告景靈殿)의 부분을 보자. 여기서는 출정과 관련해 유사(有司)에서 대사(大社)에서의 의제(宜祭)와 태묘에서의 고유제(告由祭)를 행하는 내용이 보이며, 이어 국왕이 친히 경령전에 월(鉞)을 내고 다시 들이는 것을 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사는 사직을 말하며 의제는 지기(地祇)에 드리는 제사를 뜻하고, 고태묘(告太廟)는 『예기』 왕제편의 ‘조호예(造乎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조의 묘 즉 태묘에 이르러 고하는 것을 뜻한다.

건장출정의에서는 이 ‘의대사(宜大社)’와 ‘고태묘(告太廟)’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태종 4년 2월 신묘일의 기록을 보면 겸지예조사(兼知禮曹事) 김첨(金瞻)이 성수초례(星宿醮禮)를 상정하면서 올린 글에 주목할 내용이 나타난다. 즉, 전조 고려에서 태일(太一)을 섬겨 군사를 움직일 일이 있으면 장수가 태청관에 이르러 재숙(齋宿)하고

초례(醮禮)를 올린 후 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조선에서도 장수를 보내 류제(類祭)의 예에 의해 장수를 관(觀)에 보내 하루 재숙토록 하고 제사를 행할 것 등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³⁸⁾ 구체적으로 고려에서 하늘에 대한 제사, 즉 『예기』 왕제 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류호상제(類乎上帝)’의 언급은 없지만 천신으로서의 태일에 대한 초례가 행병(行兵) 때에 있었음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하다.

이 류(類)를 포함한 의(宜)와 조(造) 등은 『고려사』에 잘 나타나 있지 않으나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다양한 초(醮)·소(疏)·제문(祭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이규보가 동경초토병마(東京招討兵馬) 때에 지은 글들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하늘에 대한 초례로서 태일초례문(太一醮禮文)과 천황초례문(天皇醮禮文)·정단행천황초례문(正旦行天皇醮禮文)이 있으며, 삼군이 모두 행한 태일초례문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이는 태종 4년 2월에 언급한 류제(類祭)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사(大社)에서의 의제(宜祭)와 관련해서는 그 사례로서 선종 4년 정월 사직에 제(祭)하여 신병(神兵)이 전쟁을 도와 줄 것을 빈 데서 그 시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더불어 봉은사(奉恩寺)에서 고태묘진전문(告太祖眞前文)을 지어 예묘(禰廟)에서의 조제(造祭)에 해당하는 제사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이규보는 당시 기주(基州) 태조진전제문(太祖眞前祭文)과 함께 개태사(開泰寺) 조전원문(祖前願文), 태조전별제문(太祖前別祭文) 등을 써 전승을 기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또한 군신(軍神)에게 행하는 제사인 마제

38)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2월 신묘.

39) 『동국이상국전집』 권38, 道場齋醮疏祭文, 天皇醮禮文·正旦行天皇醮禮文·太一醮禮文.

40) 『고려사』 권59, 지13 예1 길례대사 사직 선종 4년 정월 기사.

41) 『동국이상국전집』 권38, 道場齋醮疏祭文, 奉恩寺告太祖眞前文·基州 太祖眞前祭文·開泰寺祖前願文·太祖前別祭文. 이는 『통진』에서 언급하고 있는 ‘受命於祖’라 하여 조묘 등에 아뢰어 명을 받는다는 의미와 통한다. 실제로도 고려에서는 태묘나 경령전에서 국가 중대사 등에 대해 大筮(인종 4년 3월 을미) 卜遷都(공민왕 9년 정월 병진) 등을 행하고 있음이 보인다.

(禡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공민왕 18년 11월 이인임을 서북면도 통사로 보내자 그가 대청관에서 마제를 지냈다는 것이 보인다.⁴²⁾ 승전을 비는 제사로서의 발제(輓祭)와 관련한 기록도 확인되는데, 목종 11년 10월에 발제를 고쳐 압병제(壓兵祭)라 하였다고 한다.⁴³⁾

이외에도 각 지역신에 대한 제사를 올린 내용을 담은 제문 등이 전하고 있다. 이규보는 동경초토병마로서 승전을 기원하는 제문을 지었다. 예컨대 산해신합굴제문(山海神合屈祭文), 황지원법화회문(黃池院法華會文), 황지원용왕제문(黃池院龍王祭文), 부석사장육전원문(浮石寺丈六前願文), 지리산대왕전원문(智異山大王前願文), 제공산대왕문(祭公山大王文), 북형산제문(北兄山祭文), 경주동서양악제문(慶州東西兩岳祭文), 제소정방장군문(祭蘇挺方將軍文), 헌마공산대왕문(獻馬公山大王文)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승전을 위한 기도를 다각도로 올리고 있다.⁴⁴⁾

다음으로는 ①에서의 출월환월(出鉞還鉞)과 관련해 경령전에 고하는 의식이 보인다. 동시에 ⑤에서는 부월(鈇鉞) 수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월(鉞)은 달리 절월(節鉞) 혹은 부월(斧鉞)이라 하여 국왕이 군을 통솔하는 원수나 병마사에게 내리는 것이었다. 다만 의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출월 및 환월 때 왕이 모두 경령전에 고한다는 내용이 곧바로 경령전에서 부월을 하사한다는 내용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렇지만 ⑤에서처럼 부월을 국왕이 내려주는 것이 의례로 정해진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컨대 국왕의 부월 하사 기록은 성종 8년 3월 처음으로 동북면 및 서북면에 병마사를 두고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을 판사로 삼아 이들에게 국왕이 직접 부월을 내려 변방을 전적으로 다스리게 한 데에서 시작되었다.⁴⁵⁾ 이후 이루어진 국왕의 부월 하사와 환월(還

42)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11월.

43) 『고려사』 권63, 지17 예5 길례 잡사 목종 11년 10월.

44) 『동국이상국전집』 권38, 道場齋醮疏祭文.

45) 『고려사절요』 권2, 성종 8년 3월.

鉞) 관련 기록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2> 부월 하사 관련 기록

시기	授鉞	장소	진거
1 성종 8년 3월	始置東西北面兵馬使, 以門下侍中中書令尚書令爲判事 (중략) 判事留京城 兵馬使赴鎮 親授鉞 鉞 使專制閩外	?	『절요』 권2
2 숙종 9년 정월 계미	王以門下侍郎平章事林幹判東北面行營兵馬事 御宣政殿 授鉞鉞 往備之	宣政殿	권12
3 숙종 9년 2월 을축	以樞密院使尹瓘爲東北面行營兵馬都統 御重光殿 授鉞鉞 遣之	重光殿	권12
4 예종 2년 12월 임오삭	王御威鳳樓 瓘延寵率三軍將士 以次入庭拜 訖 賜鉞鉞遣之	威鳳樓 (西京 祖眞殿)	권64, 지18 예6 군례(『동인지문 사록』 권10)
5 예종 3년 4월 계묘	遣兵馬副元帥吳延寵 授鉞鉞 往救雄州	?	
6 예종 4년 4월 무인	東界兵馬副元帥吳延寵陞辭 王詣景靈殿 親授鉞鉞	景靈殿	
7 예종 4년 7월 임술	任懿等辭 王御重光殿 親授鉞鉞	重光殿	
8 인종 13년 정월 갑인	王御天福殿 富軾以戎服入見 命上陞 親授鉞鉞 遣之	天福殿	권64, 지18 예6 군례
9 고종 3년 12월 기미	幸順天館 御文德殿 群臣入謁 分立左右 叔瞻·冲以戎服 率諸忽管 入庭行禮 王親授鉞鉞 遣之	文德殿	권64, 지18 예6 군례
10 고종 5년 9월	趙冲等陞辭 王御大觀殿 授鉞 遣之	大觀殿	『절요』 권15
11 원종 14년 2월	中軍行營兵馬元帥金方慶率精騎八百 隨忻都等討三別抄于耽羅 王授鉞 遣之	?	『절요』 권19
12 공민왕 5년 9월 계미	以曲城伯廉悌臣爲都元帥 刑部尚書柳淵等副之 以備西北 賜貂裘·金帶 授鉞遣之	?	권64, 지18 예6 군례
13 공민왕 10년 12월	王遂以世雲爲摠兵官 (중략) 今分遣諸將 合兵攻賊 乃授鄭世雲節鉞 往董厥師 賞罰用命不用命	?	권113, 열전26 정세운(『절요』 권27)
14 공민왕 23년 7월 기축	七月以瑩爲楊廣全羅慶尚道都統使 (중략) 今授瑩節鉞往征 其督諸軍 剋期殄殲	?	권113, 열전26 최영
15 우왕 3년 9월	倭又寇海平二州 禱賜崔瑩鉞 使與元帥李希泌 金得齊楊伯淵邊安烈禹仁烈等擊走之	?	『절요』 권30
16 우왕 14년	時議按廉秩卑 不能舉職 選兩府有威望者 爲都觀察黜陟使 授教書鉞鉞以遣 云乞爲西海道都觀察使	?	권112, 열전25 조운술(『절요』 권33)

위의 <표-2>에서 확인되듯이 국왕이 경령전에 나아가 친히 원수에게 부월을 내린 사례로는 적어도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에서 살펴볼 때 ⑥의 예종 4년 4월의 것이 유일하다. 또 위의 사례들을 보면, 견장출정의의 의례에 보이는 경령전에서의 부월 하사 기록이 예종 3년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경령전에서 국왕이 친히 부월을 하사하는 내용은 예종 4년 4월에 시작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때 오연총은 동계병마부원수였다.⁴⁶⁾

이 기록이 유일하다 해서 궁궐의 편전 등에서 하사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것이었다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병권을 상징하는 부월을 견장출정의나 다음에 살펴볼 사환의에서 보듯 경령전에 두었다가 국왕이 관련 사유를 고하고 이를 출환(出還)하였을 가능성이 커서이다. 실제로 ⑥의 예종 4년 4월 기록에 앞서 예종 3년 4월 기축에 윤관과 오연총이 개선한 후 경령전에서 복명하고 부월을 환납한 내용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⁴⁷⁾

한편 <표-1> 견장출정의의 절차에서 ②~④를 보면 강사포를 입은 국왕이 대관전에 설치된 왕좌에서 만세 후 원수와 부원수 등의 재배를 받고 원수의 여러 방략 보고를 받는 장면이 정리되고 있다. 물론 <표-2>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 이후 ⑤에서는 국왕이 상장군이 올리는 부월을 받아 원수에게 내려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⑥에서처럼 국왕이 내전으로 들어가고 원수와 부원수가 태정문을 나서 병부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각 왕대 사례 가운데 예종 3년 및 4년 무렵 내용의 것이 가장 견장출정의의 의례와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 부월의 하사는 이미 성종 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경령전에서의 고유는 예종 이전에도 전개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월 출환, 강사

46) 『고려사절요』 권7, 예종 4년 4월.

47) 『고려사』 권12, 예종 3년 4월 기축.

포, 원수·부원수, 대관전과 태정문, 만세 등의 내용이 갖춰져 있음을 볼 때 예지 군례에서의 구체적 절차 등은 예종 대에 완성되었다 할 수 있겠다. 특히 전승을 위한 유·불·도의 제사가 류(類)·의(宜)·조(造) 등과 함께 갖춰졌고 원묘인 경령전에서 고유와 부월의 출환이 이루어지고 강사포를 입은 국왕이 부월을 하사하는 등의 내용이 전개되었다는 점은 고려적인 군례의 일단을 보여준다.⁴⁸⁾ 더구나 경령전과 편전 등에서의 원수·부원수의 전승방략 보고와 부월 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료들의 만세와 재배, 원수·부원수의 재배가 의례 절차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왕조의 상징이라 할 국왕이 원묘인 경령전에서 부월을 내어 하사함으로써 왕권과 왕실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여겨진다.

4. 사환의(師還儀)

군례에서 사환의의 절차 등을 의례 항목으로 규정한 고려의 방식은 독특한 면이 있다. 그것은 사환의의 명칭이 『신당서』 등에 이르기까지는 그 항목 명칭이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사환의의 절차에 개선하는 군대에 대한 영접과 원수가 부월을 바치는 행사, 국왕의 선지(宣旨) 전달, 선로포(宣露布)에 해당하는 선사주식(宣賜酒食) 등이 함께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왕조에서 사환의와 관련성이 있는 기사로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태조의 일리천전투 승리 후 귀환 및 하례 기록이다. 국왕 친정에 해당하는 것인데다 그 귀환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는 고려왕조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

48) 고려시대 유불도 삼교와 국가의례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한정수,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다. 태조 19년 9월 삼군을 거느린 태조가 일리천에서 신검 등을 무너뜨리고 삼한일통의 위업을 달성한 후 사환, 개선(凱旋)과 관련하여 행해진 내용을 확인하면 위봉루에 나아가 문무백관 및 백성의 하례를 받았다는 내용만이 보인다.⁴⁹⁾ 평탕적구선로포(平蕩賊寇宜露布) 및 견사로장군(遣使勞將軍)과 관련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 태조 이하 7대 실록을 다시 편찬하는 과정에서 소략해진 것이었다. 유금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유금필이 출정할 때마다 명을 받들어 곧 행했으며, 개환(凱還)함에 미쳐서는 태조가 반드시 맞이하고 노고를 치하했다는 내용이 보이기 때문이다. [太祖必迎勞⁵⁰⁾ 국왕이 직접 영접하고 노고를 위로했다는 면이 확인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보다 구체적 의례는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개환에 따른 의례 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고려사』에서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고려사』에서의 개환 관련 기사

	시기	내용	迎迓 방식	전거
1	태조?	每出征 受命即行 不宿於家 及凱還 太祖必迎勞 終始寵遇 諸將莫及	太祖必迎勞	권 92, 열전 5 유금필
2	성종 12년	熙留契丹營七日而還 遜寧贈以駝十首馬百匹羊千頭錦綺羅紉五百匹 成宗大喜 出迎江頭 卽遣良柔爲禮幣使入觀	成宗 出迎	권 94, 열전 7 서희
3	현종 10년 2월 갑오	甲午 姜邯贊凱還 王親迎于迎波驛 壬子 宴將帥于明福殿 并勞三軍	王親迎	권 4

49) 『고려사』 권2, 태조 19년 9월.

50)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시기	내용	迎迓 방식	전거
4	문종 34년 12월	東蕃作亂 正爲判行營兵馬事 與兵馬使崔奭廉漢兵馬副使李顛 將步騎三萬 出屯定州 … 攻破廬落凡十餘所 嘯後凱還奏捷 王喜遣左司員外郎裴緯勅曰 近緣邊事未息 宵旰軫慮 今省所奏 婉畫降戎 掃除民害 使朕無東顧之憂 惟乃之功	遣左司員外郎裴緯 勅	권95, 열전8 문정
5	예종 3년 4월 기축	尹瓘吳延寵凱還 王命具鼓吹軍衛以迎之 遣帶方侯備齊安侯偕 勞宴於東郊 瓘延寵詣景靈殿復命 還納鉄鉞 王御文德殿 引瓘延寵及諸宰樞上殿 親問邊事 入夜乃罷	鼓吹軍衛以迎之 및 勞宴	권12
6	인종 14년 4월 경자	金富弼凱還 王謁景靈殿 告平西賊		권16
7	명종 4년 11월	景升迎擊于大同江 凡二十戰皆捷 西兵大敗 景升還至平州 王遣知奏事李光挺 郊迎勞問 及至 王曰 卿以死許國 使兇徒挫氣 功不細矣 然大慙尚存 社稷之恥也 卿其勉之 仍命爲後軍摠管使 復遣之	遣知奏事李光挺 郊迎勞問	권 100, 열전 13 두경승
8	명종 24년 12월 辛巳	南路兵馬使高湧之 班師 王引見 獎諭甚厚		권20
9	고종 6년	時趙冲破契丹兵凱還 忠獻忌功 停迎迓禮 私宴將帥于竹坂宮 斂銀百官 以供其費	停迎迓禮 私宴將帥于竹坂宮	권 129, 열전 42 반역 최충헌
10	원종 14년 6월 丁酉	方慶入珍島 得米四千石·財寶器仗 悉輸王京 其陷賊良民 皆令復業 凱還 王遣使郊迎 以功加守大尉中書侍郎平章事	凱還 王遣使郊迎	권 104, 열전 17 김방경
11	공민왕 9년 4월 계미	大饗征北將士(홍건적)		권39
12	공민왕 13년 2월 戊戌	濡奉德興渡鴨綠江 崔瑩安遇慶等諸將 擊敗之 濡渡江而走 復興遣錄事金南貴獻捷 王賜南貴銀一錠 遣人賜復興酒 拜左侍中 凱還 王命有司(郊迓) 如迎駕儀 令百官 宴于國清寺南郊慰之 賜諸將賊臣田宅貲產	王命有司郊迓 如迎駕儀	권 111, 열전 24 경복흥
13	공민왕 13년 2월 壬子	(東北面都指揮使韓方信·都兵馬使金貴凱還) 賜方信綵帛 以旌其功 及凱還 賜宴內殿 尋封西原君	及凱還 賜宴內殿	(권40) 권 107, 열전 20 한방신
14	우왕 2년 7월	至鴻山 大肆殺虜 勢甚盛 … 瑩凱還 禍命宰樞郊迎 具雜戲儀衛如迎詔禮 及入見 禍賜酒 問曰 … 乃封鐵原府院君 論賞將士有差	宰樞郊迎 具雜戲儀衛如迎詔禮	권 113, 열전 26 최영
15	우왕 2년 10월	辛禡初 賜推忠亮節宣威翊贊功臣號 出爲楊廣全羅道都指揮使 兼助戰元帥 倭寇扶寧 登幸安山 安烈與羅世趙思敏柳實 督兵進攻 大破之 斬獲甚多 獻捷 禍賜白金一錠鞍馬衣服 凱還 都堂出天水寺 設儺戲迎之 進門下贊成事	設儺戲迎之	권 126, 열전 39 간신 변안렬

②성종 12년 10월의 기록을 보자. 성종은 거란을 막기 위해 시중 박양유(朴良柔)를 상군사(上軍使), 내사시랑 서희(徐熙)를 중군사(中軍使), 문하시랑 최량(崔亮)을 하군사(下軍使)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북계로 보낸 바 있다.⁵¹⁾ 이때 성종 역시도 서경까지 함께 동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고려와 거란은 각기 서희와 소손녕이 담판을 벌였고, 결국 고려가 거란에 대한 교병을 약속하고 거란이 고려의 여진 축출 및 강동 6주에 대한 축성을 보장하게 되면서 전쟁은 마무리되었다. 이 때 서희가 돌아옴에 미쳐 성종은 직접 강가에 나가 맞이했다는 기사가 보인다.⁵²⁾ 더 이상의 세부 기사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사환에 대해 국왕이 친히 위로영접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로 ③을 보자. 현종 10년 2월 거란군을 대패시킨 상원수 강감찬 및 부원수 강민첨 등과 삼군이 개선하자 이들을 맞이한 일이 보인다. 당시 강감찬은 포로와 노획물을 바쳤고, 왕은 영파역(迎波驛)까지 직접 나와 영접하면서 잔치와 함께 금화팔지(金花八枝)를 강감찬의 머리에 직접 꽂아주었다. 또 주연과 함께 위로와 감탄을 그치지 않았다 하였다. 이어 명복전(明福殿)에서 장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삼군의 노고를 치하한 내용이 확인된다.

현종 10년 2월의 사례에서도 사환의의 절차를 적용했다기보다는 국왕이 직접 나와 영접연을 베풀고 명복전에서 노연례(勞宴禮)를 행한 것이 보이는 것이다. 다만 강감찬의 머리에 금화팔지를 꽂아준 면은 주목할 부분이었다. 이후의 사환의에 해당하는 사례 등에서 더 이상 금화팔지 기록은 나오지 않아 매우 특별한 은례에 해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④를 보면, 문종 34년 12월 동여진 반란 사건과 그 정벌에 나섰던 중서시랑평장사 관행영병마사 문정(文正) 등이 보기 3만을 거느

51) 『고려사』 권3, 성종 12년 10월.

52)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리고 적을 소탕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들이 개환하자 문종은 이듬해 2월에 태묘 및 6릉에 고유하고자 하였다.⁵³⁾ 사환에 따른 조치라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상세치 않아 개선에 따라 사신을 보내 영접례를 행하고 노연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부월의 출환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태묘 및 6릉에 동북로의 용추(戎醜)를 소멸시킨 공업에 대한 고유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성종 12년이나 현종 10년, 문종 34년 및 35년의 사례만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문종 때까지 사환의에 해당하는 군례는 「예지」의 사환의와 다른 면이 있었을 것이다. 즉, 서회나 강감찬, 문정 등의 개환에 따른 조치 등에서 서회나 강감찬의 사례에서는 국왕이 직접 영접하여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지만 문정의 사례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 국왕 영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종 12년 및 현종 10년의 사례에서는 태묘나 선왕의 능, 경령전에 고유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다가 문종 35년에 이르러서야 태묘 및 6릉에 고유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부월의 환납에 대한 내용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 장의 <표-2> 부월 하사 기록 중 ②③의 숙종 9년 정월과 2월을 보면 동여진의 적에 대비하고 토벌하기 위해 임간(林幹)에게 부월을 내렸으나 그가 패배하자 윤관에게 부월을 내렸던 기록이 확인된다. 이때 수부월(授鉄鉞)의 의식은 이루어졌지만 부월의 환납에 대한 기록은 없다.⁵⁴⁾

그런데 <표-3>의 ⑤를 보면, 예종 3년 4월 기축일에 개선한 윤관과 오연충이 직접 경령전에 이르러 복명하고 부월을 환납하고 있다. 그 후 예종이 문덕전에 나아가 윤관 등과 재추와 함께 변방의 일을 물었다는 내용도 확인된다.⁵⁵⁾ 경령전에 원수가 직접 복명하고

53) 『고려사』 권9, 문종 35년 2월 병자.

54) 그러나 여기에는 환납 관련 의례 내용이 기사에서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부월을 환납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고려사』에서 이는 유일한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김부식은 서적(西賊)을 평정한 후 우선 평서경헌첩표(平西京獻捷表)를 국왕에게 올린 후 개선하여 돌아왔다.⁵⁵⁾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면, 부월에 대한 언급이 없이 왕이 경령전을 참알하고 서적 평정을 고하였다는 내용이 <표-3>의 ⑥인종 14년 4월 경자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사환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견장출정의와 짝하여 정리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앞서 견장출정의가 예종 2년을 전후해 정비되기 시작해 인종 16년 5월 이후 충렬왕 27년 4월 이전 성립된 것으로 보았는데 사환의 역시도 그와 비슷하다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영접례나 노연, 부월환납, 경령전 고유 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례에 있는 사환의의 절차를 편의상 6단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사환의(師還儀)의 절차

구분	내용
① 사환 1 일 전 진 설	師還前一日 尙舍局設王座於大觀殿 設元帥副元帥拜位於殿庭 守宮署 設元帥副元帥次於殿門外朝堂 又於宿亭 設元帥副元帥座於東邊 筵伴宰臣座於西邊 又設拜命褥位於庭中
② 영접례	筵伴到宿亭 閣門引元帥以下 出門 相揖 入門 各就褥位 鈐轄及諸軍使副判官錄事 每等異位重行 立定 舍人喝 元帥以下向闕 再拜 問聖體 舍人喝 元帥以下再拜 筵伴口宣 訖 舍人喝 元帥以下又再拜 訖 閣門引筵伴及元帥副元帥 各從東西階 升亭上 就褥位 立定 執禮官交呈起居狀 筵伴及元帥起居 訖 閣門引各就座 赴勞宴 禮畢 閣門引筵伴及元帥副元帥以下 降就庭中褥位 舍人喝 元帥以下再拜 元帥奉謝表 詣筵伴前 跪進 筵伴小前 接表 俱退復位 舍人喝 元帥以下又再拜 訖 筵伴以表傳於持函 持函者先出 元帥及筵伴 伴行出門 相揖分位
③ 當 日 師 還 儀 陳 設	其日晝 亭設筵伴公侯伯座於東邊 元帥副元帥座於西邊 其餘 拜命勞宴附表禮數如上儀

55) 『고려사』 권12, 예종 3년 4월 己丑.

56) 『동인지문사록』 권10, 表 平西京獻捷表.

구분	내용
④개선의례	元帥勒所部兵衛 鼓吹 令押凱歌 分左右二部 以次陳列 鼓吹振作 至廣化門 樂止 依時刻 禁衛入陳於殿庭 如常儀 樞密以下左右侍臣 入就殿庭位 元帥副元帥 率諸軍寮佐 至殿門外 閣門引元帥副元帥 入次
⑤국왕좌殿과執斧鉞, 山呼	訖 近臣奏 外辦 王服絳紗袍 出坐殿 禁衛奏山呼 再拜 舍人喝 樞密以下侍臣常起居 訖 閣門引宰臣 入就位 舍人喝 宰臣再拜 訖 閣門各引宰臣樞密 自東西側階升殿 就位立 閣門引諸軍使副判官錄事諸領府郎將以上 入殿庭 每等異位重行立定 閣門引元帥 捧斧鉞 入殿庭 自西階升殿 詣御座之右 跪上斧鉞 王降座 執斧鉞 傳授上將軍 訖 元帥降自西階 就拜位 舍人喝 元帥以下再拜 閣門引出殿門外 元帥副元帥及諸軍使副判官錄事從事官 各服公服 閣門分引元帥以下 入就殿庭 重行北向 立定 舍人喝 元帥以下再拜舞蹈 又再拜 奏聖躬萬福 舍人喝 元帥以下再拜 元帥出行 致辭復位 舍人喝 元帥以下群官再拜舞蹈 又再拜
⑥국왕의宣旨와宣賜酒食, 王入內殿	訖 近臣承旨降自東階 詣元帥東北 西向傳宣 稱 定難功業 惟朕乃嘉 元帥以下再拜舞蹈 又再拜 閣門傳宣賜酒食 舍人喝 元帥以下再拜舞蹈 又再拜 訖 閣門引元帥以下 西出 王入內殿 幸臣樞密左右侍臣及仗衛 以次退

앞서 살펴본 견장출정의에 이어진 사환의의 의례 구성 시기는 같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사환의가 견장출정의에 짝하고 있음과 함께 대관전이 등장하고 연반(筵伴)의 영접, 만세 및 성공만복, 재배무도, 선사주식, 정난공업에 대한 선지 등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①사환 1일 전 진설을 보면, 자리 배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상사국(尙舍局)에서 국왕의 자리를 대관전에, 원수·부원수의 배위(拜位)를 전정(殿庭)에 설치하였다. 이어 수궁서(守宮署)에서는 원수·부원수가 머물 막차(幕次)를 전문(殿門) 밖 조당(朝堂)에 설치하고, 또한 숙정(宿亭)에는 원수와 부원수의 자리를 동변(東邊)에, 그리고 연반의 자리는 서변(西邊)에 두는 한편, 뜰 중앙에는 분부를 받들 옥위(褥位)를 두었다.

이 같은 진설이 이루어진 뒤 실제 국왕의 명을 받은 연반이 개전한 원수 이하 각군(各軍)에 대한 영접례를 행하는 장면이 ②영접례에 정리되었다. 이를 보면 자리가 마련된 숙정에서 연반과 원수 등

이 예를 행하고 국왕의 구두(口頭) 선지(宣旨)가 전해지면 원수 등이 재배하고 이후 노연이 전개되고 있다. 이어 연반과 원수가 동서계단으로 숙정 위에 올라 자리하고 기거장(起居狀)을 올려 문안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원수가 국왕에 대해 사례하는 표문을 올리고 예를 다하게 되면 영접례가 마무리되었다.

②영접례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보자. 예종 3년 4월 기축일에 윤관 등이 개환하자 예종이 고취군위(鼓吹軍衛)로 맞이하도록 하는 한편 대방후 보(備)와 제안후 서(僑)를 연반으로 삼아 동교(東郊)에서 노연을 베풀었음이 확인된다.⁵⁷⁾ 또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동교 노연 광경에 대해 묘사하였다. 내용을 보면 공경(公卿)이 동교에 나와 영접 및 노연을 행하는데, 미인이 대기하고 술자리가 베풀어졌으며 홍패(紅旆)가 세워졌음이 나타난다.⁵⁸⁾

이를 보면 사환의 영접례에서는 국왕이 친히 행하기보다는 고취군위를 성대하게 배치토록 하고 연반을 보내 숙정을 마련해 영접과 연회를 베풀도록 하는 한편 국왕의 선지와 원수의 표문, 연반과 원수 등의 기거 등이 행해진 것이 확인되며, 이때 숙정은 동교에 두어지고 있었다. 물론 노연에는 미인과 술 등이 갖춰져 즐거움과 흥취를 돋우고 있었다. 연반은 공경의 지위에 있는 자를 보냈다 여겨지지만 앞서 성종 12년과 현종 10년의 기록으로 볼 때 국왕이 직접 맞이하는 조치도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반은 예종 3년 4월의 경우처럼 공(公)·후(侯)·백(伯) 가운데 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연반을 보내 사환을 맞이하는 영접례는 ‘영아례(迎迓禮)’, ‘교아(郊迓)’, ‘교영(郊迎)’ 등으로도 불렸다. 고종 6년 조충이 강동성에서 거란군을 격파하고 개선하여 돌아오자 최충헌이 그 공을 꺼려하여 영아례를 중지하고 죽판궁(竹坂宮)에서 장수들에게 사연(私宴)을 베풀었다라 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공민왕 13년 2월 무술의 기록

57) 『고려사』 권12, 예종 3년 4월 己丑.

58) 『동국이상국전집』 권12, 고을시 幕中書懷示同營諸公.

59) 『고려사』 권103, 열전16 조충;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 최충헌; 『고려사

을 보면 서북면도원수 경천흥과 도순위사 최영 등이 덕흥군의 병사를 물리치고 개환하자 유사에 명해 교아(郊迓)를 행하는데 어가를 맞이하는 의례 [迎駕儀] 처럼 행할 것을 명한 바 있다.⁶⁰⁾ 영아례를 성대하게 행하라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때로 이는 조서를 맞이하는 의례 [迎詔禮] 처럼 하라 한 기사로도 확인된다.⁶¹⁾

③당일 사환의를 보면 진설과 개선, 그리고 국왕에 대한 부월 환납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일 개선까지의 부분을 보면 ②영접례에서 두어졌던 숙정에 연반 및 원수의 자리를 전과 달리하고 있다. 즉 이때에는 연반(筵伴)인 공·후·백의 경우에는 동변에, 원수·부원수는 서변에 자리를 두고 배명(拜命)·노연(勞宴)·부표(附表)·예수(禮數)의 의례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④개선의례를 보자. 전일에 우선 영접 및 노연이 행해진 후 개선의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때 고취 연주와 함께 개가(凱歌)가 불렸으며, 이는 황성의 정문인 광화문(廣化門)에까지 지속되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쥘문 밖에 원수·부원수 등이 이르면 합문이 이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막차로 들어가게 하였다. 악지(樂志) 아악(雅樂)에서 고취악을 쓰는 절도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사환 때 주정(晝亭)에서 진열하였다가 돌아오면 광화문에 이르러 그친다하고 있다.⁶²⁾ 사환의나 용고취악절도(用鼓吹樂節度)를 보면 개선 사환은 광화문에서 일단락되고 있는 것이다.

전승 및 정난 후 원수를 중심으로 한 개선군은 ④의 개선의례에 서처럼 개선가를 불렀던 듯하다. 이규보가 남긴 개선 관련 시구를 보면 ‘개선가 부르는 속에 박수소리 요란하며 [奏凱聲中千指拍]’라 하였고,⁶³⁾ 고려 말 민사평(閔思平)도 개선가와 관련하여 시로서 표현

절요』 권15, 고종 6년 3월.

60) 『고려사』 권64, 지18 예6 군례 사환의, 공민왕 13년 2월 戊戌.

61) 『고려사』 권113, 열전26 최영.

62) 『고려사』 권70, 지24 악1 아악 用鼓吹樂節度.

63) 『동국이상국전집』 권12, 고을시 幕中書懷示同營諸公.

한 바가 있는데, ‘개선가 소리 속에 경직(耕織)이 편안해 지니 [凱歌聲裏安耕織]’라 하고 있다.⁶⁴⁾

광화문에까지의 개선의식이 정리되면 이어서는 ⑤국왕 좌전(坐殿)과 집부월(執斧鉞), 산호(山呼) 등이 절차대로 전개되었다. 이 단계에서의 초점은 원수가 부월을 바치면 국왕이 이를 받아 보관토록 하는 것과 이후 원수와 재추 등 신료들이 산호, 무도(舞蹈)와 함께 성공만복(聖躬萬福)을 아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의례 절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신이 ‘외판(外辦)’이라 하여 각기 자리에 맞춰 정돈하게 하면 이어 국왕은 견장출정의 때와 마찬가지로 강사포를 입고 대관전 왕좌에 앉았다. 다음 금위(禁衛)가 산호재배(山呼再拜)를 아뢰면 사인(舍人)의 구령으로 추밀이하(樞密以下) 시신(侍臣)은 평상시처럼 기거(起居)를 행하였다. 이를 마치면 합문이 재추를 인도하여 전위에 서게 하고 이어 원수를 인도하여 부월을 받들고 전정으로 들어가 서쪽 섬돌로 전(殿)에 오르게 하여 어좌 우측에서 무릎을 꿇고 부월을 올렸다. 국왕은 이를 받아 상장군에게 전해주고 원수는 서계로 다시 내려와 배위에서 재배하며 원수 이하 휘하인은 쥘문 밖으로 나갔다. 이어 공복(公服)을 입도록 한 뒤 북면하여 두 줄로 서게 하고 무도(舞蹈)와 국왕을 위해 ‘성공만복(聖躬萬福)’을 아뢰었다.

특히 무도가 이 시점에 행해진 면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기』 악기편을 보면, “그래서 시가(詩歌)란 길게 말하는 것이고, 길게 말하여도 부족하기 때문에 탄식 [嗟歎] 을 하며, 탄식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는 뛰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대목이 있다.⁶⁵⁾ 정현의 주를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과 발이 춤추는 것은 기쁨이 지극한 것 [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 歡之至也] 이라 해설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무도의 행위는

64) 『급암시집』 권5, 시 牧丹詩.

65) 『예기』 樂記, “(중략) 故長言之 長言之不足 故嗟歎之 嗟歎之不足 故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也”

군주의 은혜에 대한 환희를 자신도 모르게 보여주는 신체의례이자 신종의례(臣從儀禮)의 하나라 여겨지는 것이다.⁶⁶⁾ 따라서 무도는 군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종의 신체의례로 행해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공복을 입기 전 단계까지의 복식은 갑주를 착용한 상태였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예기』 곡례상에서는 “갑옷을 입은 자는 절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하면 좌배(夔拜)가 되기 때문이다.”라 한 대목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갑주를 착용한 상태로는 재배할 할 수 없는데, 공복을 입기 전 원수가 부월을 올리고 재배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단계에서의 복식은 견장출정의에서처럼 용복(戎服)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본다.

국왕이 대관전에 나아와 원수가 올리는 부월을 받고 이를 상장군에게 전하는 의식과, 그리고 성공만복 등을 아뢰는 행사가 끝나면 국왕은 이를 받아 원수 및 신료들에게 ⑥에서처럼 ‘정난(定難)의 공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짐은 매우 기쁘노라 [定難功業 惟朕乃嘉]’는 내용을 담은 선지(宣旨)를 전하도록 하였다. 이어 원수 이하에게 선사주식(宣賜酒食)을 행하도록 하고 이것이 끝나면 원수 이하 등은 서쪽으로 나가고 국왕은 내전으로 들어갔다.

다만 사환의에서는 원수가 경령전에 복명하면서 부월을 환납하거나 국왕이 경령전에서 원수의 복명이나 원수가 바치는 부월을 받아 경령전에 환납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지 견장출정의에서 부월의 출환과 관련해 경령전에 친히 고한다는 조목으로 유추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의례의 내용은 각각의 사환의 의례 단계에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⑦~⑮에 이르기까지 사료에서는 사환의의 내용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사환의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은 ‘영아(迎迓)’가 쓰이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66) 이에 대한 지적으로는 다음을 참조. 渡邊信一郎 지음, 문정화임대희 옮김, 『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天空의 玉座』, 신서원, 2002, 136~141쪽.

<표-3>과 <표-4>를 고려할 때 사환의의 전체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적어도 현종 대까지는 출정하였다가 승첩을 보고하고 돌아오는 원수 및 삼군 등에 대해 국왕이 직접 출영(出迎)하여 맞이하였음이 보이고 있다. 이는 태조나, 성종, 현종 대 기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승리 후 개선한 이들에 대해 군주가 직접 출영하지 못하자 연반(筵伴) 혹은 공후백, 사신을 보내 환영 및 선지를 전하도록 하고 이들을 맞이하는 예를 영가의(迎駕儀)나 영조례(迎詔禮)에 준해 그 성대함을 다하도록 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있음이 보인다. 그만큼 개선하는 원수와 삼군 등의 막료 등에 대한 위로가 성대히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원묘인 경령전에서의 부월 환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사환의의 의례 단계에서는 ⑤국왕 좌전과 집부월(執斧鉞)이 있는 뒤 산호와 함께 원수가 어좌의 우측에서 부월을 무릎 꿇고 올리면 [跪上]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 부월을 잡고 상장군에게 전수(傳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만큼 부월을 왕명이자 군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요소들이 상징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호를 행하고 군주의 행위에 따라 무도를 전개하며, 성공만복을 아뢰면서 군주의 '정난공업(定難功業) 유짐내가(惟朕乃嘉)'의 선지와 술과 음식을 선사(宣賜)토록 한 데 대한 무도 등을 행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독특한 것은 견장출정의에서는 산호가 보이지만 무도 이하 성공만복 등은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도나 성공만복 등이 국왕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것은 군주의 은혜에 대한 신종(臣從)이자 충성 맹세의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환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례에서는 의례 절차에 맞게 정확히 거행하기보다는 의례가 갖는 기본 정

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전승을 축하하고 원수 및 부원수와 그 휘하를 격려하고 부월을 환납토록 한 뒤 국왕의 노고 치하가 행해지면서 선지와 주식을 내려 대연(大宴)을 베풀 점이 이를 말해준다 하겠다.

5. 맺음말

이상을 통해 고려시대 군례의 성립과 관련한 이해를 살펴보고 대표적 군례로서 『예지』 건장출정의와 사환의를 중심으로 관련 사례와 구체적 성립시기, 의례 내용 및 특징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예기』와 『주례』 및 여러 사서, 『대당개원례』와 『통전』 등을 통해 군례가 어떻게 이해되면서 의례로 구성되었는가를 정리하였다. 먼저 군례는 치군(治軍)으로 접근되어 공경(恭敬)·준절(撙節)·퇴양(退讓)의 내용을 담은 예를 통해 위엄을 행할 것이 그 이념 토대로 구성되었고, 이어 방국을 동화(同和)하는 예이자 위엄으로 다스리기 위한 군례가 갖춰졌다. 이와 함께 『통전』에서 주나라 제도로 소개된 출정 시 류(類)·의(宜)·조(造)의 제사가 있는 이래 마(禡)·발(輶), 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가 갖춰졌고 이 중 마조·선목·마사·마보 등은 길례 소사로 편제되어 군례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크게 본다면 치군의 의미와 군례의 대강이 정리되는 가운데 승전을 위한 제사 등이 갖춰진 것이다. 그리고 『신당서』 단계에서는 류(類)·의(宜)·조(造)와 함께 마(禡)·발(輶)의 제사, 강무, 수전(狩田), 사(射), 합삭별고(合朔伐鼓), 대나지례(大難之禮) 등이 정리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군례는 황제친정 및 고유(告由)의 제사, 강무, 수전, 사, 합삭별고, 대나 등의 예로 유형화되었다 하겠다.

고려는 이러한 군례에 있는 예와 치군의 이념을 수용하면서 류

(類)·의(宜)·조(造)와 함께 마(禡)·발(輓) 등의 제사, 그리고 친정 및 고유(告由)의 제사, 강무, 수전, 사, 합삭별고, 대나 등의 예를 갖췄다 여겨지지만 실제 『고려사』 군례에는 견장출정의나 사환의, 구일월식의, 계동대나의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실제 사료로 본다면 류(類)·의(宜)·조(造)의 제사나 친정, 견장출정, 사(射) 등 다수의 군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3장에서는 군례의 구체적 사례로서 견장출정의의 성립과 내용, 실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의례절차와 운영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견장출정의의 의례 규정은 인종 16년 5월 이후에서 충렬왕 27년 이전의 것이었다. 그러나 의례 내용 자체는 이미 예종 2년 10월 임인일의 윤관과 오연충에 대한 출정 기사가 있어 예종 2년 이전에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승을 위한 유·불·도의 다양한 제사가 류(類)·의(宜)·조(造) 등과 함께 갖춰져 행해지고 있었다. 원묘인 경령전에서의 고유와 부월의 출환이 이루어질 때 강사포를 입은 국왕은 부월을 하사하여 제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췄다. 이처럼 경령전과 편전 등에서의 원수·부원수의 전승방략 보고와 부월 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료들의 만세와 재배, 원수·부원수의 재배가 의례 절차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치군(治軍)과 방국(邦國) 동화(同和)를 위한 위엄을 군주가 인식하고 이를 군례로서 반영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출정에 따른 의례에 짝하는 것으로서 ‘사환의’의 내용과 사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정리하였다. 사환의에서는 개선하는 군대에 대한 영접과 원수가 부월을 바치는 의식, 국왕의 선지(宣旨) 전달, 선로포(宣露布)에 해당하는 선사주식(宣賜酒食) 등이 함께 행해졌다. 사환의 관련 사례로 볼 때 적어도 문종 때까지 「예지」 사환의 의례와 같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견장출정의처럼 그 성립은 예종 2년 전후 정비되기 시작하여 인종 16년 5월 이후 충렬왕 27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 사례에

영접례나 노연, 부월환납, 경령전 고유 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조나 성종, 현종 대의 경우 국왕의 직접 출영을 통한 영접이 이루어졌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연반(筵伴) 혹은 공후백, 사신을 보내 환영 및 선지를 전하도록 하면서 어가를 맞이하거나 조서를 맞이하는 예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이어 왕명과 군령을 상징하는 부월을 받아 경령전에 환납하게 되면 국왕의 노고 치하가 있었다. 즉, 선지와 주식을 내려 대연(大宴)을 베풀면서 이를 실현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사환의 속에는 견장출정의에서와는 달리 무도나 성공만복이 행해지고 국왕의 ‘정난공업(定難功業) 유짐내가(惟朕乃嘉)’의 선지를 통해 입을 수 있듯이 국왕에 대한 신종(臣從) 의식이 구현되었다.

이처럼 고려에서는 국내외를 예 및 위엄으로 다스려 동화(同和)하기 위해 치군(治軍)을 의례화한 군례(軍禮)를 정비하였으며, 류(類)·의(宜)·조(造) 등의 승전을 위한 제사를 갖추고 있었다. 『고려사』의 군례에 정리된 것은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사환의(師還儀)·구일월식의(救日月食儀)·계동대나의(季冬大難儀)에 불과하였다. 대략 예종 및 인종 대에 의례로 정비되었을 견장출정의와 사환의를 통해 고려는 경령전에서의 부월 출납과 환납을 국왕을 중심으로 행함으로써 신성한 왕권의 권위를 높이려 하였다. 특히 사환의에서는 국왕을 중심으로 그 덕을 나누는 면을 무도나 성공만복, 선지 및 선로포·선사주식 등으로 상징화하여 재삼 고려 왕실과 국왕에 대한 신종(臣從) 의식을 강화하였으며, 개환한 이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동락(同樂)의 면이 반영되었다.

(원고투고일: 2019.1.4.,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14)

주제어 : 군례(軍禮),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사환의(師還儀), 경령전(景靈殿), 부월(斧鉞), 무도(舞蹈), 류(類)·의(宜)·조(造), 동락(同樂),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

<참 고 문 헌>

- 김당택, 「『상정고금예문』의 편찬 시기와 그 의도」, 『호남문화연구』 21(1992)
- 김창현,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韓國史學報』 44(2011):37-83,
<http://uci.kci.go.kr/G704-000690.2011..44.009>
- 김철웅, 「『詳定古今禮』의 편찬 시기와 내용」, 『동양학』 33(2003):233-253,
<http://uci.kci.go.kr/G704-000715.2003..33.008>
- 김철웅,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통권114(2009):101-127,
<http://uci.kci.go.kr/G704-000772.2009.32.1.014>
- 김해영, 「『상정고금례』와 고려조의 祀典」, 『국사관논총』 55, 1994
- 渡邊信一郎 지음, 문정화임대희 옮김, 『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天空의 玉座』, 신서원, 2002
- 尹薰杓, 「高麗時代 軍制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4, 1997
-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研究』, 일조각, 1991
- 李旺茂,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東洋古典研究』
54(2014):319-348, <http://uci.kci.go.kr/G704-001739.2014..54.003>
- 장동익, 「고려시대의 景靈殿」, 『歷史教育論集』 43(2009):487-512,
<http://uci.kci.go.kr/G704-002017.2009..43.013>
- 채미하,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韓國史研究』 149(2010):107-139,
<http://uci.kci.go.kr/G704-000361.2010..149.011>
- 한정수,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 『사학연구』 107(2012):1-44,
<http://uci.kci.go.kr/G704-001261.2012..107.006>
- 한정수, 「고려 太祖代 대의 교섭과 外交儀禮」, 『韓國史研究』 170(2015):137-175,
<http://uci.kci.go.kr/G704-000361.2015..170.009>
- 한정수,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
55(2018):319-360
- 洪承賢, 「晉代 喪服書의 편찬과 성격」, 『東洋史學研究』 102(2008):1-39,
<http://uci.kci.go.kr/G704-000250.2008..102.001>
- 홍영의,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2012):67-91,
<http://uci.kci.go.kr/G704-SER000013600.2012.37..012>

<Abstract>

The Formativ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military rites,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and Sahwaneui(師還儀) in th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Han, Jung-Soo

This study dealt with three research tasks in a broad sense. The first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military rites and the composition of the volume 'military rites' of 『Yeji(예지)』.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contents and actual case of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and thereby attempt to understand what ritual procedures and operation occurred. The final task is to examine the contents, cases and operational methods of Sahwaneui(師還儀) paired with the rites of going into battle.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The Goryeo Dynasty organized the military rites ritualizing the military control by administering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by means of courtesy and dignity for the purpose of their assimilation. The military rites in Goryeo Dynasty were composed of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Sahwaneui(師還儀), Guilwolsikeui(救日月食儀) and Gyedongdaenaewi(季冬大儺儀). But it is judged that the actual rites differed from the military rites of 『Goryosa(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First of all,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were equipped with the ancestral rites for a successful war such as Ryu(類), Eui(宜), Jo(造) and so on. The Goryeo Dynasty enhanced the dignity of the holy royal authority by performing the rites for taking and returning battle-axes and halberds(斧鉞) at Gyeongryeongjeon(景靈殿) with the king at the center through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and Sahwaneui(師還儀) probably organized in the reigning period of kings Yejong and Injong. In

particular, Sahwaneui(師還儀) again reinforced subjects' loyalty towards its royal family and kings of the Goryeo Dynasty by symbolizing the facet of sharing virtues with the king at the center by means of dance(舞蹈), Seonggunmanbok(聖躬萬福), Seonji(宣旨), Seonropo(宣露布). Seonsajusik(宣賜酒食) and so on. It mirrored the aspect of sharing the triumphant joy with those making a triumphant return from the battle.

Key words : military rites, Gyeonjangchuljeugeui(遣將出征儀), Sahwaneui (師還儀), Gyeongryeongjeon(景靈殿), battle-axes and halberds(斧鉞), dance(舞蹈), Ryu(類), Eui(宜), Jo(造), sharing joy, 『Sangjeonggogumryeo(詳定古今禮)』